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93년 11월 24일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93년 11월 24일
- 라. 상정일자 : 93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충신)

가. 제안이유

- 내무부 지기 12200-555(93.10.28) 및 경기도지방 12200-2860(93.11.6)호와 관련
-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사업소 명칭 변경)

- 위생처리장관리소 → 위생환경사업소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로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
의 건 년 월 일	93. 12. 6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1. 2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사유

- 내무부 지기 12200-555(93.10.28) 및 경기도지방 12200-2860(93.11.6)호와 관련
-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사업소 명칭변경)

- 위생처리장관리소 _____ 위생환경사업소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를 “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부천시위생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위치)중 “관리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3조(업무) “관리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4조(소장) “관리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5조(공무원)중 “관리소”를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명		제 명	
<u>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u>		<u>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u>	
제1조(목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하수의 위생적 종		제1조(목적)	
말처리를 위하여 <u>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u> (이하 “관리소”라		... <u>부천시위생환경사업소</u>	
<u>한다.</u>)를 둔다.		(...“사업소”...)	
제2조(위치) <u>관리소</u> 는 부천시 대장동에 둔다.		제2조(위치) <u>사업소</u>	
제3조(업무) <u>관리소</u> 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u>사업소</u>	
1. 분뇨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1.	
2. 분뇨하수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 발전		2.	
3. 분뇨하수의 처리 사용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		3.	
4. 그밖에 분뇨, 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소장)① <u>관리소</u> 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제4조(소장)① <u>사업소</u>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		②	

헌	행	개	정
읍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u>관리소</u> 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제5조(공무원) <u>사업소</u>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생략)		제6조(헌행과 같음)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3년 11월 24일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93년 11월 24일
- 라. 상정일자 : 93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충신)

가. 제안이유

- 내무부 지기 12200-555(93.10.28) 및 경기도방 12200-2860(93.11.6)호와 관련
-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사업소 명칭 변경)

- 하수종말처리사업소 ————— 수질환경사업소